

June 16,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39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6. 8. ~ 6. 12.)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발표

2020. 6. 9.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건을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5개 핵심 분야 테마 정보(통합기업정보, 통합금융회사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국가자산공매정보) 제공, ② 최초로 비외부감사법인 정보를 무료로 개방, ③ 개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9개 금융공공기관 정보의 개방범위 확대 및 개방기관 참여 확대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보도자료](#)



[\[참고자료\]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내용](#)



[금융위·금감원1]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6.5.금융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함(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②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 및 평가, ③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공시할 의무 부여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자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금융위·금감원2]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발표

2020. 6. 11. 재보험업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 ②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되도록 허가간주제 폐지, ③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의 허가요건 완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5차 회의개최 재보험업 개편](#)



[금융위·기재부]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020. 6. 11. 기업의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반 확충 프로그램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3차 추경안에 캠프의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500억원 현금출자 반영, ② 대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기업 또는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개별 수요에 맞게 폭 넓게 지원, ③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채권단 등과 협업체계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 보도자료



[참고자료]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 안건



[과기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총력 지원 발표

2020.6.5. 과학기술·ICT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 추진(34억원), ② 산재된 지역 R&D 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이전·창업 등으로 완결되도록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조성, ③ 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운영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



[공정위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6. 9.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주요 내용으로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②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단, 9월 30일까지의 거래 행위는 기존 시행령 적용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면제), ③ 허위 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 공시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 공시도 누락 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 인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2]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개정 재추진 발표

2020. 6. 11.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②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 및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③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참고자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별첨자료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 6. 11.부터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②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 ③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상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자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발표

2020. 6. 10. 유통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상품 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등 업계와의 지속적 협의 및 제조사, 유통사, IT서비스 개발사와의 구축 데이터 제공 예정, ②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등을 통한 온라인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③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상용화 및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 재정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성윤모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국토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공포

2020. 6.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① 항공기 신규 등록 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 확인, 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③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 제도 관련하여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항공 안전,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현행법은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드론 탐지기술과 더불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드론 제어 주파수에 대한 전파차단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원칙을 유지하되,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시 신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시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현행법상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관보19768호)]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거나 대기업 집단의 자금고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CV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8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 8조의2제2항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정부의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현행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이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다양한 영상산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 시켜 한류의 세계화 및 국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각각 15%, 10%, 5%로 확대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6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 및 제58조)

3.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과제들과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체 내용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주요 입법·정책을 선별하여 소개 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국회 주요입법정책현안]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